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칙

조 문	현행	개 정(안)	비고		
제5조의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제5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2.12.04.><개정 2014.02.26., 2015.08.20., 2016.02.29., 2017.04.27., 2017.09.01., 2018.07.10., 2019.10.01., 2020.11.23., 2022.03.01., 2022.04.15., 2022.12.01., 2023.12.15., 2024.10.24.>		간호학과 신규인가 승인 및 정원조정 신청 결과 반영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 사회 계열	유아교육학과			28
		휴먼케어서비스학과			15
		사회복지학과			68
		호텔관광학과		5	
		경영학과		10	
		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15	
		사회복지상담학과			42
		의료코디네이션학과		5	
	자연 과학 계열	호텔외식조리학과		5	
		반려동물학과			15
		뷰티아트학과		10	
		그린농식품가공학과		10	
	공학 계열	자동차학과			10
		소방안전관리학과			11
		스마트자동차학과		10	
첨단산업공학과		10			
소계		80	189		
입학정원 합계		269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인문 사회 계열	유아교육학과		10		
	청소년상담복지학과		12		
	사회복지학과		63		
	호텔관광학과	10			
	경영학과	11			
	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14			
	사회복지상담학과		55		
	의료코디네이션학과	5			
자연 과학 계열	호텔외식조리학과	10			
	반려동물학과		15		
	뷰티아트학과	10			
	그린농식품가공학과	10			
공학 계열	간호학과	10			
	자동차학과		5		
	소방안전관리학과		13		
	스마트자동차학과	10			
첨단산업공학과	5				
소계		95	173		
입학정원 합계		268			

제9조(수업연한)	제9조(수업연한) ①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4.03.25., 2012.02.10., 2012.12.04., 2016.02.29.〉 ②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로 한다. 〈신설2023.09.01.〉	제9조(수업연한) ①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4.03.25., 2012.02.10., 2012.12.04., 2016.02.29.〉 ②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이상으로 한다. 〈신설2023.09.01.〉〈개정 2025.10.15.〉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요건 변경에 따라 수업연한 개정
제10조(재학연한)	제10조(재학연한) ①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06.03.01.〉 ②〈개정 2003.08.27.〉 삭제 〈2006.03.01.〉 ③〈개정 2003.08.27.〉 삭제 〈2006.03.01.〉 ④〈개정 2003.08.27., 2004.03.25.〉 삭제 〈2006.03.01.〉 ⑤외국인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12.01.〉 [전문개정 2022.12.01.]	제10조(재학연한) ①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06.03.01.〉 ②〈개정 2003.08.27.〉 삭제 〈2006.03.01.〉 ③〈개정 2003.08.27.〉 삭제 〈2006.03.01.〉 ④〈개정 2003.08.27., 2004.03.25.〉 삭제 〈2006.03.01.〉 ⑤외국인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12.01.〉 ⑥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7년으로 한다. 〈신설 2025.10.15.〉 [전문개정 2022.12.01.]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재학연한 명시
제20조(복학생의 수강신청)	제20조(복학생의 수강신청) ①복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 해당학기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신청한다. ②복학생의 학점 취득에 있어서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교과목과 교과목의 학점이 종전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편된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04.13.〉	제20조(복학생의 수강신청) ①복학생의 수강신청은 입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5.10.15.〉 ②복학생의 학점 취득에 있어서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교과목과 교과목의 학점이 종전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편된 교과목 및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04.13.〉	졸업기준이 졸업년도에서 입학년도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학생의 복학 시 수강신청 기준 변경

제25조(편입학)	제25조(편입학) ①전문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어 자격 조건을 갖춘 자는 1학년 1학기를 수료한 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 폐과된 과의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03.25., 2025.09.01.> ②편입학은 각 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3.25.>	제25조(편입학) ①전문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어 자격 조건을 갖춘 자는 1학년 1학기를 수료한 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 폐과된 과의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03.25., 2025.09.01.> ②편입학은 각 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4.03.25.> ③전공심화과정의 편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신설 2025.10.15.> ④전문기술석사과정의 편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신설 2025.10.15.>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편입학에 제한을 두기 위한 규정 명시
제26조(재입학)	제26조(재입학) ①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산업체 위탁 교육생 중 제적된 자는 재취업한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64조제1항에 의거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03.25., 2014.08.28., 2020.11.23.> ②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거쳐 득한다.<개정 2021.05.17., 2023.12.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한다. 다만, 동일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른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14.02.26.>	제26조(재입학) ①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산업체 위탁 교육생 중 제적된 자는 재취업한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64조제1항에 의거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03.25., 2014.08.28., 2020.11.23.> ②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부)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거쳐 득한다.<개정 2021.05.17., 2023.12.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한다. 다만, 동일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른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개정 2014.02.26.> ④전공심화과정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과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을 시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5.10.15.> ⑤전문기술석사과정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정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 여석이 있을 시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5.10.15.>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재입학에 대한 내용 명시

제33조(학점이수)	제33조(학점이수) ①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2.10., 2016.02.29.> ②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26., 2023.12.15., 2024.09.01.> ③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12.04.><개정 2014.02.26., 2023.12.15., 2024.12.01.>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 사회봉사, 창업강좌, 직업기초능력 함양교육 등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24학점) 초과 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4.13.> ⑤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최대 9학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09.01.>	제33조(학점이수) ①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02.10., 2016.02.29.> ②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26., 2023.12.15., 2024.09.01.> ③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12.04.><개정 2014.02.26., 2023.12.15., 2024.12.01.>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 사회봉사, 창업강좌, 직업기초능력 함양교육 등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24학점) 초과 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4.13.> ⑤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9학점 까지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09.01.><개정 2025.10.15.>	한국장학재단_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심사에 필요한 학생정보 업로드시 최저 이수학점에 대한 기준 필요에 따른 장학부서 요청 내용 반영
--------------------------	--	---	--

제46조의2(전문기술
석사과정 졸업)

제46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 ①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04.15., 2025.03.01.>

분류	학기	학점	요건
논문트랙	4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 이수	학위논문 본심사 합격
프로젝트 트랙			프로젝트 결과 충족
기타 트랙			전공 관련 분야의 기능장에 준하는 자격증 취득

②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에 관한 세부 및 기타사항은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46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 ①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04.15., 2025.03.01., 2025.10.15.>

1. 일반트랙

분류	학기	학점	종합시험	요건
논문트랙	4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 이수	합격	학위논문 예비심사, 본심사 합격
프로젝트 트랙				프로젝트 결과 예비심사, 본심사 합격
자격증 트랙				입학 후 전공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특허 트랙				입학 후 전공 관련 분야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명	전공 관련 분야 자격증 기준
미래자동차과정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등
SI기반사회복지과정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사회복지사 등

2. 과정트랙

학기	학점	종합시험
5학기 이상 등록	30학점 이상 이수	합격

②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에 관한 세부 및 기타사항은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기준
변경 및 세부사항 명시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석사과정 수료)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수료) ①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제46조의 이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5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논문, 프로젝트, 기타 트랙 모두 공통으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4.15., 2025.03.01.> 3.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본조신설 2023.06.01.][전문개정 2023.12.15.]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수료) ①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제46조의2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5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10.15.> ②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위과정의 트랙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5.> 2. 해당 학위과정의 트랙에 따른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24.04.15., 2025.03.01., 2025.10.15.> 3.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본조신설 2023.06.01.][전문개정 2023.12.15.]	수업연한 및 졸업 요건 변경에 따른 내용 일원화
제79조의2(부설기관)	제79조의2(부설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둔다.<개정 2022.04.15., 2022.12.01., 2023.09.01., 2025.09.01.> 1. 한국어교육원	제79조의2(부설기관) ①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둔다.<개정 2022.04.15., 2022.12.01., 2023.09.01., 2025.09.01., 2025.10.15.> 1. 국제교육원	대학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제 변경(부서 명칭 변경)
별지서식 제4호	별첨	별첨	2025.09.01.자 '전문기술대학원장' 보직 신설에 따른 양식 개정
별지서식 제5호	별첨	별첨	
별표 2	별첨	별첨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학위종별 제·개정
별표 4	별첨	별첨	학과 수요조사를 통한 관련 학과 내용 개정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사회복지과, 글로벌융합복지과, 자율전공학부, 휴먼케어서비스과, 글로벌산업공학과, 글로벌섬유비즈니스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6학년도 말까지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종전 사회복지과, 글로벌융합복지과, 자율전공학부 소속의 경우 사회복지학부 소속으로, 휴먼케어서비스과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과 소속으로, 글로벌산업공학과 소속의 경우 글로벌뿌리산업공학과 소속으로, 글로벌섬유비즈니스과 소속의 경우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소속으로 본다. 본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종전 소속학과	202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소속학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부
글로벌융합복지과	
자율전공학부	
휴먼케어서비스과	청소년상담복지과
글로벌산업공학과	글로벌뿌리산업공학과
글로벌섬유비즈니스과	글로벌섬유패션비즈니스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학칙 중 제46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요건, 제49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 수료는 2025학년도 전기졸업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시 및 졸업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기준 명시

제 호

학위등록번호: 서정(전문기술석사)-000-0000

학 위 증 서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위 사람은 0000학년도 본 대학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이수하여 000000 전문기술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정대학교 총장 000 직인

제 호

학위등록번호: 서정(전문기술석사)-000-0000

학 위 증 서

성명:
생년월일:
과 정:

위 사람은 0000학년도 본 대학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심사에 합격하여 0000전문기술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서정대학교 전문기술대학원장 관광학박사 0 0 0

직인

위의 인정에 따라 0000전문기술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정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0 0 0

직인

제 호

수료증서

성명:

생년월일:

학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수료하였기 때문에 이 증서를 수여
함

년 월 일

서정대학교 총장 000 직인

제 호

수료증서

성명:
생년월일:
과정:

위 사람은 본 대학교 OOOO전문기술석사과정을
수료하였기 때문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정대학교 전문기술대학원장 관광학 박사 0 0 0

직인

현행

[별표 2]<신설 2012.12.04.><개정 2014.02.26., 2015.08.20., 2016.02.29., 2017.09.01., 2022.03.01., 2022.12.01., 2024.10.24.>

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해 당 학 과
행정학사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식품조리학사	식품조리학과
호텔외식조리학사	호텔외식조리학과
경영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창업경영학과
공업학사	자동차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게임영상컨텐츠학과, 첨단산업공학과
미용학사	뷰티아트학과
보건학사	애완동물학과, 반려동물학과, 의료코디네이션학과
아동청소년학사	아동청소년보육학과
상담아동청소년학사	상담아동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사	휴먼케어서비스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사	사회복지상담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다문화복지한국어학사 (한국어교육전공)	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관광학사	호텔관광학과, 호텔항공관광학과
이학사	그린농식품가공학과

개 정(안)

[별표 2]<신설 2012.12.04.><개정 2014.02.26., 2015.08.20., 2016.02.29., 2017.09.01., 2022.03.01., 2022.12.01., 2024.10.24., [2025.10.15.](#)>

학사학위의 종별

종 별	해 당 학 과
행정학사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식품조리학사	식품조리학과
호텔외식조리학사	호텔외식조리학과
경영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 창업경영학과
공업학사	자동차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게임영상컨텐츠학과, 첨단산업공학과
미용학사	뷰티아트학과
보건학사	애완동물학과, 반려동물학과, 의료코디네이션학과
아동청소년학사	아동청소년보육학과
상담아동청소년학사	상담아동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사	휴먼케어서비스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사	사회복지상담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육전공) (사회복지전공)	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관광학사	호텔관광학과, 호텔항공관광학과
이학사	그린농식품가공학과
청소년상담복지학사	청소년상담복지학과

현행

[별표 4]<신설 2024.10.24.>

전공심화과정 관련학과

연번	학과	관련학과
1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아동교육상담과, 아동학습지도과, 아동미술교육과, 특수복지교육과, 보육심리상담과, 아동보육과, 영유아보육과, 유아영어지도과, 유아특수보육과, 유아특수재활과, 장애유아보육과, 유아체육전공 등 유사학과
2	사회복지학과	가족복지과, 가족사회복지과, 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경영과, 사회복지비서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상담과, 경찰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과, 행정복지과, 노인보건복지과, 보건복지계열,
3	사회복지상담학과	보건사회복지과, 의료복지과, 복지관광과, 실버복지경영과, 실버복지과, 실버케어복지과, 케어복지과, 케어사회복지과, 실버케어보건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노인복지과, 산업복지경영과, 관광레저복지과, 건강복지과, 노인복지상담과, 상담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과, 선교복지전공 등 유사학과
4	휴먼케어서비스학과	
5	경영학과	인터넷경영정보과, 인터넷산업경영과, 경영관리과, 비즈니스경영과, 경영과, 서비스경영과, e-비즈니스과, 경영정보과, 마케팅과, 세무회계정보과, 무역과, 유통경영과, 디지털마케팅과, 물류유통정보과, 샵마스터마케팅과, 세무회계과, 샵마스터경영과, 상경계열, 창업경영과, 철도경영과, 철도운수경영과, 디지털경영과, 협동조합경영과, 기업경영과, 골프산업경영과, 관광외식경영과, 호텔관광경영과, 글로벌비즈니스과, 물류경영과, 산업경영과, 인터넷전자상거래과 등 유사학과
6	호텔관광학과	관광과, 국제관광과, 관광경영과, 관광정보과, 국제문화관광과, 디지털관광과, 지역산업관광과, 호텔관광과, 관광컨벤션산업과, 카지노경영과, 관광리조트과, 관광레저과, 국제관광·항공서비스전공, 여행항공과, 항공여행정보과, 항공운항과, 호텔항공과, 스튜어디스과, 항공비서행정과, 항공운항과, 항공관광과,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관광과, 호텔경영정보전공, 호텔관광크루즈과, 호텔항공관광과, 관광항공승무과, 항공컨벤션경영과, 관광항공철도승무과, 항공실무서비스과 등 유사학과
7	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글로벌융합복지과, 다문화한국어과, 다문화복지과, 다문화학과, 글로벌한국학과, 다문화정책과, 국제다문화과, 이민다문화정책과, 한국어문화과, 한국어다문화학과, 국제다문화학과, 가족복지과, 사회복지상담과, 글로벌교육문화학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상담과, 사회복지경영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과, 한국어과 등 유사학과
8	의료코디네이션학과	간호과, 의무행정과, 병원행정과, 병원의료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병원경영과, 보건위생과, 병원의료업무과, 보건복지행정과, 의료복지과, 의료보험심사과, 의료전산시스템과, 의료정보관리과, 의료정보시스템과, 의무기록정보과, 의료사회복지학과, 의약관리학과, 의약정보관리과, 의료관광과 등 유사학과
9	반려동물학과	애완동물보건관리과, 애완동물뷰티과, 환경코디네이션과, 동물과학계열, 동물과학과, 동물산업과, 동물자원과, 자원동물과, 동물조련이벤트과, 동물보호계열, 애완동물미용과, 애완동물뷰티패션과, 애완동물간호전공, 애완동물관리과, 마사과, 말산업과, 바이오동물전공, 애완동물뷰티과, 애완동물과, 반려동물과, 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과 등 유사학과
10	뷰티아트학과	뷰티케어과, 뷰티미용과, 뷰티아트과, 미용피부관리과, 피부미용디자인과, 관광뷰티디자인과, 메이크업코디과, 미용예술과, 뷰티디자인과, 피부비만관리과, 미용계열, 뷰티코디네이션과, 피부보건과, 화장품과학과, 뷰티아트디자인과, 스타일리스트과, 코디메이크업과, 화장품미용과, 미용아트과, 헤어디자인과, 방송메이크업전공, 방송모델과, 방송연예코디과, 뷰티건강복지과, 스킨케어과, 스파테라피과, 의료미용과, 웨딩&이벤트과, 웨딩뷰티패션과, 토탈뷰티디자인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등 유사학과

11	호텔외식조리 학과	호텔외식조리과, 식품영양조리과, 호텔식품과, 관광호텔조리과, 국제호텔쿠킹과, 식음료조리과, 전통조리과, 조리예술과, 호텔조리과, 식품가공조리과, 푸드스타일리스트과, 관광외식조리과, 제과데코레이션과, 호텔조리영양과, 호텔조리제빵과, 호텔푸드코디네이터과, 바리스타&소믈리에과, 웰빙외식조리과, 국제서양조리과, 국제소믈리에과, 일식조리전공제빵·조리관련계열 등 유사학과
12	그린농식품가공 학과	식품가공과, 식품생명과학과, 바이오식품과, 발효식품과, 식품과학과, 웰빙식품과, 그린식품가공과, 식품영양과, 식품영양조리과, 호텔식품과, 식음료조리과, 호텔조리제빵과, 웰빙외식조리과, 호텔푸드코디네이터과, 전통조리과, 친환경농업기술과, 특용작물가공과, 농업경영과, 농업생명과학과 등 유사학과
13	소방안전관리 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행정과, 소방안전과, 소방안전설비과, 소방방재행정과, 소방시스템과, 소방방재과, 소방방재안전과, 소방방재드론학과, 건축소방행정학과, 건축소방과, 건축소방안전과, 건축소방설비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계열 등 유사학과
14	자동차학과	기계자동차과, 자동차기계과, 자동차매니저과, 자동차사무관리과, 자동차서비스과, 자동차유지관리과, 차세대자동차과, 기계자동차산업계열, 기계차량계열, 기계자동차공학군, 스마트자동차과, 자동차튜닝과, 자동차설계군, 자동차정비군, 자동차전자과, 제철·자동차계열, 카오디오과 등 유사학과
15	스마트자동차 학과	
16	첨단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과, 산업안전관리과,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금속재료과, 섬유신소재과, 재료공학과, 신소재응용화학과, 응용화학과, 재료정보과, 제철금속과, 금속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열처리과, 금형설계과, 표면처리과, 산업설비자동화과, 신소재공학과, 용접공학과, 첨단소재공학과, 재료·산업계열 등 유사학과

개 정(안)

[별표 4]<신설 2024.10.24.><개정 2025.10.15.>

전공심화과정 관련 학과

연번	학과	관련 학과
1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아동교육상담과, 아동학습지도과, 아동미술교육과, 특수복지교육과, 보육심리상담과, 아동보육과, 영유아보육과, 유아영어지도과, 유아특수보육과, 유아특수재활과, 장애유아보육과, 유아체육전공 등 유사학과
2	사회복지학과	가족복지과, 가족사회복지과, 복지경영과, 복지상담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경영과, 사회복지비서행정과,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상담과, 경찰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과, 행정복지과, 노인보건복지과, 보건복지계열,
3	사회복지상담학과	보건사회복지과, 의료복지과, 복지관광과, 실버복지경영과, 실버복지과, 실버케어복지과, 케어복지과, 케어사회복지과, 실버케어보건복지과, 사회복지과, 아동노인복지과, 산업복지경영과, 관광레저복지과, 건강복지과, 노인복지상담과, 상담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과, 선교복지전공, 휴먼케어서비스과, 청소년상담복지과 등 유사학과
4	청소년상담복지학과	
5	경영학과	인터넷경영정보과, 인터넷산업경영과, 경영관리과, 비즈니스경영과, 경영과, 서비스경영과, e-비즈니스과, 경영정보과, 마케팅과, 세무회계정보과, 무역과, 유통경영과, 디지털마케팅과, 물류유통정보과, 샵마스터마케팅과, 세무회계과, 샵마스터경영과, 상경계열, 창업경영과, 철도경영과, 철도운수경영과, 디지털경영과, 협동조합경영과, 기업경영과, 골프산업경영과, 관광외식경영과, 호텔관광경영과, 글로벌비즈니스과, 물류경영과, 산업경영과, 인터넷전자상거래과 등 유사학과
6	호텔관광학과	관광과, 국제관광과, 관광경영과, 관광정보과, 국제문화관광과, 디지털관광과, 지역산업관광과, 호텔관광과, 관광컨벤션산업과, 카지노경영과, 관광리조트과, 관광레저과, 국제관광·항공서비스전공, 여행항공과, 항공여행정보과, 항공운항과, 호텔항공과, 스튜어디스과, 항공비서행정과, 항공운항과, 항공관광과,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관광과, 호텔경영정보전공, 호텔관광크루즈과, 호텔항공관광과, 관광항공승무과, 항공컨벤션경영과, 관광항공철도승무과, 항공실무서비스과 등 유사학과
7	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글로벌융합복지과, 다문화한국어과, 다문화복지과, 다문화학과, 글로벌한국학과, 다문화정책과, 국제다문화과, 이민다문화정책과, 한국어문화과, 한국어다문화학과, 국제다문화학과, 가족복지과, 사회복지상담과, 글로벌교육문화학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상담과, 사회복지경영과, 복지행정과, 사회복지과, 한국어과, 휴먼케어서비스과, 청소년상담복지과, 국어국문과 등 유사학과
8	의료코디네이션학과	간호과, 의무행정과, 병원행정과, 병원의료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병원경영과, 보건위생과, 병원의료업무과, 보건복지행정과, 의료복지과, 의료보험심사과, 의료전산시스템과, 의료정보관리과, 의료정보시스템과, 의무기록정보과, 의료사회복지학과, 의약관리학과, 의약정보관리과, 의료관광과 등 유사학과
9	반려동물학과	애완동물보건관리과, 애완동물뷰티과, 환경코디네이션과, 동물과학계열, 동물과학과, 동물산업과, 동물자원과, 자원동물과, 동물조련이벤트과, 동물보호계열, 애완동물미용과, 애완동물뷰티패션과, 애완동물간호전공, 애완동물관리과, 마사과, 말산업과, 바이오동물전공, 애완동물뷰티과, 애완동물과, 반려동물과, 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과 등 유사학과
10	뷰티아트학과	뷰티케어과, 뷰티미용과, 뷰티아트과, 미용피부관리과, 피부미용디자인과, 관광뷰티디자인과, 메이크업코디과, 미용예술과, 뷰티디자인과, 피부비만관리과, 미용계열, 뷰티코디네이션과, 피부보건과, 화장품과학과, 뷰티아트디자인과, 스타일리스트과, 코디메이크업과, 화장품미용과, 미용아트과, 헤어디자인과, 방송메이크업전공, 방송모델과, 방송연예코디과, 뷰티건강복지과, 스킨케어과, 스파테라피과, 의료미용과, 웨딩&이벤트과, 웨딩뷰티패션과, 토탈뷰티디자인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등 유사학과

11	호텔외식조리 학과	호텔외식조리과, 식품영양조리과, 호텔식품과, 관광호텔조리과, 국제호텔쿠킹과, 식음료조리과, 전통조리과, 조리예술과, 호텔조리과, 식품가공조리과, 푸드스타일리스트과, 관광외식조리과, 제과데코레이션과, 호텔조리영양과, 호텔조리제빵과, 호텔푸드코디네이터과, 바리스타&소믈리에과, 웰빙외식조리과, 국제서양조리과, 국제소믈리에과, 일식조리전공제빵·조리관련계열 등 유사학과
12	그린농식품가공 학과	식품가공과, 식품생명과학과, 바이오식품과, 발효식품과, 식품과학과, 웰빙식품과, 그린식품가공과, 식품영양과, 식품영양조리과, 호텔식품과, 식음료조리과, 호텔조리제빵과, 웰빙외식조리과, 호텔푸드코디네이터과, 전통조리과, 친환경농업기술과, 특용작물가공과, 농업경영과, 농업생명과학과 등 유사학과
13	소방안전관리 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행정과, 소방안전과, 소방안전설비과, 소방방재행정과, 소방시스템과, 소방방재과, 소방방재안전과, 소방방재드론학과, 건축소방행정학과, 건축소방과, 건축소방안전과, 건축소방설비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계열 등 유사학과
14	자동차학과	기계자동차과, 자동차기계과, 자동차매니저과, 자동차사무관리과, 자동차서비스과, 자동차유지관리과, 차세대자동차과, 기계자동차산업계열, 기계차량계열, 기계자동차공학군, 스마트자동차과, 자동차튜닝과, 자동차설계군, 자동차정비군, 자동차전자과, 제철·자동차계열, 카오디오과 등 유사학과
15	스마트자동차 학과	
16	첨단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과, 산업안전관리과, 산업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금속재료과, 섬유신소재과, 재료공학과, 신소재응용화학과, 응용화학과, 재료정보과, 제철금속과, 금속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열처리과, 금형설계과, 표면처리과, 산업설비자동화과, 신소재공학과, 용접공학과, 첨단소재공학과, 재료·산업계열 등 유사학과
17	간호학과	간호과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칙 시행세칙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48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의 기준)	제48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의 기준) ①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논문 트랙은 24학점 이상 취득과 작성한 논문 심사원을 제출하여 본심사를 통과한 자<개정 2025.03.01.> 3. 프로젝트 트랙은 24학점 이상 취득과 프로젝트 결과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개정 2024.04.01., 2025.03.01.> 4. 기타 트랙은 24학점 이상 취득과 입학 후 전공 관련 분야의 기능장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개정 2024.04.15., 2025.03.01.> [본조신설 2023.12.15.]	제48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의 기준) ①전문기술석사과정 일반트랙의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5.> 1. 트랙별 4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25.10.15.> 2. 논문 트랙은 작성한 논문 심사원을 제출하여 예비심사, 본심사를 모두 통과한 자<개정 2025.03.01., 2025.10.15.> 3. 프로젝트 트랙은 작성한 기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예비심사, 본심사를 모두 통과한 자<개정 2024.04.01., 2025.03.01., 2025.10.15.> 4. 자격증 트랙은 입학 후 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개정 2024.04.15., 2025.03.01., 2025.10.15.> 5. 특허 트랙은 입학 후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자 <신설 2025.10.15.> ②전문기술석사과정 과정트랙의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10.15.> 1. 5학기 이상 등록, 30학점 이상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본조신설 2023.12.15.]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기준 변경에 따른 시행세칙 개정
별지서식 제10호	별첨	별첨	국제학생 중도탈락율, 불법체류율 관리를 위한 내용 일부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의 기준 적용시기) 제48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의 기준)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전기졸업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현행														
[별지서식 제10호] <개정 2023.12.15., 2024.04.15.>														
퇴학원		결재	계	부처장	처장	총장								
소속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유 (학생기재란)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퇴학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등록금 반환 규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table><tr><td>학기개시일~30일</td><td>31일~60일</td><td>61일~90일</td><td>91일~종료</td></tr><tr><td>6/5 반환</td><td>1/3 반환</td><td>1/2 반환</td><td>0 반환</td></tr></table> 본인은 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성명 : (인) 보호자 : (인) 서정대학교총장귀하							학기개시일~30일	31일~60일	61일~90일	91일~종료	6/5 반환	1/3 반환	1/2 반환	0 반환
학기개시일~30일	31일~60일	61일~90일	91일~종료											
6/5 반환	1/3 반환	1/2 반환	0 반환											
지도교수	학부(과)장	행정처		학생복지처(장학)										

개 정(안)					
[별지서식 제10호] <개정 2023.12.15., 2024.04.15., 2025.10.15.>					
퇴 학 원		결	계	부처장	처장
		재			
소속학과		학년-학기	-	학번	
성 명		생년월일			
진로사항	귀국 / 취업 / 진학	핸드폰번호			
국제인증 중도탈락을 포함여부		불법체류율 포함여부			
사 유 (학생기재란)					
사 유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기재란)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퇴학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등록금 반환 규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학기개시일~30일		31일~60일	61일~90일	91일~종료	
6/5 반환		1/3 반환	1/2 반환	0 반환	
본인은 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학(부)과장 : (인)					
지도교수 : (인)					
서 정 대 학 교 총 장 귀하					
지도교수	학부(과)장	행정처		학생복지처(장학)	